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70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피고, 피항소인 ○○시 ○○출장소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구합8084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 26. ○○시 B 대 900㎡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21. 7. 23. ○○시 B 대 900㎡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재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어려워졌던바,"부터 제10행의 "사용하고 있으므로,"까지를 "어려워졌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제5쪽 제2행, 제9쪽 제2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원고하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원고는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는데,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한 조항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이를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77조의2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재산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

판사 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4

판사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4

별지1

취득세(2021년 부과기준-가산금 제외)

구분	당초본세	가산세	본세합계(가산세포함)
[기계실,1층,2층,3층,4층] 건물 1756.48㎡	72,845,850	25,821,300	98,667,150
[지하1층] 건물 606.24㎡	25,142,360	10,959,490	36,101,850
[5층] 건물 441.76㎡ 추정	18,320,940	7,650,770	25,971,710
[기계실,1층,2층,3층,4층] 563.6800㎡	43,771,100	15,370,770	59,141,870
[5층] 141.7700㎡ 추정	11,008,550	4,560,330	15,568,880
[지하1층] 194.5500㎡	15,107,370	6,534,750	21,642,120
	186,196,170	70,897,410	257,093,580

재산세(2021년 부과기준-가산금 제외)

구분	당초본세
2020년 토지분	4,296,810
2019년 토지분	4,232,500
2018년 토지분	3,571,850
2017년 토지분	3,440,300
2020년 건축물#4	6,288,700
2019년 건축물#3	6,247,470
2020년 건축물#5	6,195,840
	34,273,470

취득세+재산세 본세 합계 291,367,050 <---가산금제외